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00

발의연월일 : 2014. 7. 17.

발 의 자 : 황인자・이종진・홍문표 서상기・이명수・조현룡 김춘진・김명연・염동열 황영철・李宰榮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장근로 제한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육아휴직 등의 대상 근로자와 육아지원 대상 근로자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대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육아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